
「2026년 지역창업특화지원」
1인창조 · 중장년기술창업센터
9월 신규 입주기업 모집

「2026년 지역창업특화지원」에서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
1인창조기업, 중장년기술기업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, 신규 입주기업을
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8월

(재)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
□ 모집개요

- 공 고 명 : 「2026년 지역창업특화지원」 1인창조·중장년기술창업센터
9월 신규 입주 기업 모집
- 입주공간 : 전일빌딩 5층 (광주특별시 동구 금남로245)
- 모집일정 : ~ 2026.09.11.(금)
- 모집규모 : 5개사 내외
- 모집대상

구분	인정범위	비고
1인 창조기업	-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-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※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, 1인 창조기업 범위 제외 업종은 접수 불가	** [별표 1] 1인창조기업 인정범위 확인 필수
중장년기술 창업기업	- 경력·기술 등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(예비)창업자 또는 입주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	

○ 우대사항

1. (기술 우대)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(예비)창업 기업
 - 특허/지식재산권/인증, 기술개발 실적 및 수상 경력, 동종업계의 경력 등 보유 기업
2. (분야 우대) 문화콘텐츠, ICT 융합 분야 기업
 - 문화콘텐츠 단독 분야 또는 ICT와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

○ 제한대상

1.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, 1인 창조기업 범위 제외 업종의 기업
 - ※ [별표1] 참조 및 ‘통계청 통계분류포털’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확인 가능
2.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보육센터 또는 입주 시설에 입주한 기업
3.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기업
4.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및 국세/지방세 등 체납 기업

□ 지원내용

○ 창업공간 무상지원

- 사무공간 및 화상 회의실, 휴게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
- 입주실 내 사무용 집기(책상, 의자) 제공
- 제빙기, 정수기, 공용 복합기, 출입 보안시스템 등 편의 시설 제공
- 공용공간 wifi 및 각 업체별, 구성원별 IP(인터넷) 지원
- 진흥원 운영 시설 및 장비 사용시 할인 혜택

○ 사업화 지원

- 전문가 자문, 교육, 세미나,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
- 기업 간담회, 성과공유회 등 기업교류 프로그램 운영
- 오픈 이노베이션, IR 데이 등 워크넷 프로그램 운영

□ 입주기간

- 최초(신규)입주는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며 기업의 퇴거 요청이나 센터 이전 등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함.
- 입주 1년 이후 부터는 입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연장 가능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업은 입주연장이 제한 됨
- 센터 운영 상황 및 기업 경영활동에 따라 입주실이 변동될 수 있음
- 관련 기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함
- 입주 계약기간 동안이라도 이용 규칙 위반 시, 계약해지 조치 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

○ 접수기간 : ~ 2026.9.11.(금)

○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(ivory@gicon.or.kr)

※ 각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합쳐 제출

※ 메일 및 파일명 [회사명_9월 신규 입주 신청]

○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	세부사항	
필수서류	1	입주신청서	- 하단의 첨부파일 ‘(서식)입주신청서 일체’ 이용 - 신청서 내 인감날인 또는 서명 필수 -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	
	2	사업계획서		
	3	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	
	4	대표자 이력서	- 자유 형식으로 작성	
	5	사업자등록증	- 현 사업자등록증(2026.7.이후 발행건) - 예비창업자의 경우,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	
	6	발표자료	- PPT, 영상 등 자유 형식으로 준비	
해당기업	7	가점사항	수상	-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내역
	8		기업인증	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
	9	* 2025~2026년 자료 내역 제출	매출	-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- 수출신고필증
	10		고용	- 4대보험가입자명부(2026.7.이후 발행건)
	11		투자	- 투자계약서, 입금증(거래내역확인증) *민감정보 제외, 해당시 문의
	12		지재권	- 특허, 디자인, 상표, 실용실안 출원 및 등록증
	13		지원사업 선정	- 창업패키지, 사업화 자금, 입주 지원 등의 선정 확인서, 협약서
	14		인증	- 벤처/사회적 인증서

※ 가점사항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점수 인정(미제출 시, 0점)

※ 기재된 증빙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사전 문의 바람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신청 기업 준비	모집공고 및 접수	~ '26.09.11.(금) 18:00	·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, 온라인 접수 * 접수완료 메일 확인
	K-startup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요청	~ '26.09.11.(금)	· 입주 신청 기업 필수 사항
평가 진행	1차 서류 검토	~ '26.09.14.(월)	· 지원 기업 1차 스크리닝
	발표평가	'26.09.16.(수)	· 2차 서류 및 발표 평가
	결과 통보	'26.09.22.(화)	· 개별 안내
결과	계약체결	~'26.09.28.	·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안내
	입주	'26.10.01.~	전일빌딩245 5층

*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□ 선정평가

- 평가일자 : 2026.09.16.(수) ※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- 평가장소 : 전일빌딩245(예정)
- 평가방법 : 시간제한 발표평가
- 평가위원 : 외부전문가 5인 내외 구성 예정
- 평가항목 : 「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 세부관리지침」에 따름

평가항목	창업자 역량	사업계획의 적정성	기술성	시장성	입주 후 활동 계획 등
배 점	30	20	20	20	10

- 결 과 :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안내 (메일 및 문자)

□ 유의사항

- 입주 신청시 ‘K-Startup’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요청 필수
- 예비창업자의 경우,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
- 기 창업자의 경우,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
- 사업계획서는 입주 기간 내 계약 유지 및 평가 기준이 되므로,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활동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(퇴거)할 수 있음
-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시, 센터의 해석에 따름
-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 기한 이후에 도달한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□ 문의

담당팀	사업명	문의처	접수처
창업도약팀	[지역창업특화지원] 1인창조·중장년기술창업센터 9월 신규 입주기업 모집	062-610-9521 062-610-9522	ivory@gicon.or.kr

[별표 1]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

□ **(정의)**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관련법령 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

○ **(유예기간)**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
* **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**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광 업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05
	금속광업	06
	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	07
	광업지원서비스업	08
제조업	담배제조업	12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1차 금속 제조업	24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5
	수도사업	36
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7
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38
	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건설업	종합건설업	41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	전문직별 공사업	42
도매 및 소매업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45
	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	소매업;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	47
운수업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49
	수상 운송업	50
	항공 운송업	51
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숙박 및 음식점업	숙박업	55
	음식점 및 주점업	56
금융 및 보험업	금융업	64
	보험 및 연금업	65
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66
부동산업 및 임대업	부동산업	68
	임대업; 부동산 제외	69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	86
	사회복지 서비스업	8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"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"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